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
------	----

제출년월일 : 2003.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에 대한 폐기물반입 수수료 환산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고,
- 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관리 운용 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규정(1만제곱미터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 나. 주민협의체(15인)를 구성하여 지원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추진.
- 다. 주민지원기금을 평창군 출연금외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을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리.
- 라. 기금관리위원회(9인)를 구성하여 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평창군출연금 40억원(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협의를 의해 확보)
 - 폐기물처리비용의 10/100 : 폐기물처리비용산정대상연도 다음해 2월까지 매년 당초예산 확보하여 지출.
- 다. 입법예고 : “별첨”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소각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 ✓ 2.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거주하는 읍·면의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0명. //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4. 평창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 /

②군수는 다음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 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평창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에 10/100을 곱한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 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은
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매립장운영팀장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 임명직 : 해당지역 군의회의원, 재무과장, 환경복지과장, 해당지역
읍·면장.
2. 위촉직 :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포함)

⑤당연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수당 등) ①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②심의회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증빙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군수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변경)계획서

소요금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월 일

신청인 : 평창군 000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대 표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회의록
 2. 기타 필요한 증빙서

<별지 제2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적 요	금 액	

<별지 제3호 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관 제 법 령 발 취 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본항개정·후단신설 97. 8. 28 시행 99. 7. 1)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본호개정 97. 8. 28, 시행 98. 1. 1)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 할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입 법 예 고 결 과

1. 입법예고기간 : 2003. 03. 11 ~ 03. 30(20일)
2. 입법예고방법 : 평창군공고 2003-247호(2003.03.10) 및 읍면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 일 시 : 2003. 3. 18(화) 14:00

○ 장 소 : 미탄면사무소 면장실

○ 의견제출자 : 미탄면군의원 외 4명

○ 제출의견 :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요청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중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명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 폐기물처리시설부지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
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7명에서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거주하는 읍·
면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명

- 평창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1명. (신설)

4. 의견검토결과

- 관련법 검토결과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매립장에 대하여는 15인 이내로 구성할수 있어 문제
점이 없고, 기타사항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출의견을 개정조
례안에 반영하였음.